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개선방안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변 용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I. 서 론

우리나라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에도 근로를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은 소득유지의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와 지위를 부여하고 나아가 자아실현의 장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선천적 장애를 포함한 후천적 장애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사적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금융·임대소득을 비롯한 자산소득과 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수급을 위한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비장애인에 비해 가능성이 더 낮으며, 이로 인해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

한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가용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즉, 장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합한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소득을 얻으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인의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며, 장애인의 의존적인 생활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실현과 자존심을 고취시킨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이 어떠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일반인들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사회에 완전하게 통합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취업이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에는 약 215만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구는 산업의 발달과 다양화에 따라 각종 재해 및 교통사고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범주가 확대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관련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장애인 취업실태

1) 취업률 및 실업률

본 고에서는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업자[1]와 실업자[2],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3]의 기준(ILO 기준)을 적용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신장애를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할 경우 대다수의 중증 장애인은 취업욕구가 있고, 직업재활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취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관행이라든지 또는 장애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망실업자가 많고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미취업하고 있는 원인을 고려하여 실망실업자가 포함된 실업률을 산정해 보았다. 여기서 미취업 원인은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임금이 너무 낮아서,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출·퇴근이 힘들어서, 취업정보나 취업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일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이 없어서이다. 이러한 미취업 원인을 고려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 해소된다거나, 편의시설이 갖추어진다거나 또는 적합한 직종의 개발이나 기술 훈련 등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ILO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2%이며 2000년의 47.8%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2000년의 실업 수준이 28.4%인데 비해 ILO 기준을 적용한 2005년도의 실업률은 10.6%로서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대비 취업자의 비율은 2005년의 경우 34.12%로서 2000년의 34.2%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2005년 ILO 기준 실업률은 10.6%로써 전체 실업률(2005년 6월) 3.3%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ILO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실업자 수는 82.2천명으로 추정된다.

1) 취업자는 가) 조사대상주간 중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 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잇으나, 조사대상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말한다.

2) 조사대상 주간 중 전혀 수입있는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서, 가) 구직기간에 따라 1주와 4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로서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표 1.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32,363	2,560	1,728	832	29,803	7.91	67.50	32.50	5.34
20~29세	107,808	51,068	39,923	11,145	56,740	47.37	78.18	21.82	37.03
30~39세	203,035	115,922	99,022	16,900	87,113	57.09	85.42	14.58	48.77
40~49세	383,408	224,166	202,845	21,321	159,242	58.47	90.49	9.51	52.91
50~64세	628,285	275,704	249,580	26,124	352,581	43.88	90.52	9.48	39.72
65세 이상	681,889	107,739	101,857	5,882	574,150	15.80	94.54	5.46	14.94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전국[1]	38,468,000	23,976,000	23,191,000	785,000	14,511	62.3	96.7	3.3	60.29

자료: 1) 통계청,『한국통계월보』, 2005. 10.

한편 장애인은 그 결과 장애인 미취업 원인 고려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4.12%이며, 실업률은 23.1%로서 2000년의 28.4%에 비해 5.3% 포인트가 감소하여 그동안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의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4%로서 2000년의 47.8%보다 3.4% 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업률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10대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10대의 실업률이 가장 높고 40대의 실업률이 가장 낮다는 말과 같다. 또한 20대의 실업률이 39.9%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ILO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82.2천명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3.5%이고, 여성장애인은 20.2%로써,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미취업 원인 고려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208.3천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정부의 각종 고용정책이나 직업재활 정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률은 23.1%로서 2000년의 28.4%에 비해 5.3%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은 21.1%, 여자는 28.8%로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7.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ILO 기준 적용시 남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았으나, 미취업

표 2.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32,363	3,732	1,728	2,004	28,631	11.53	46.30	53.70	5.34
20~29세	107,808	66,412	39,923	26,489	41,396	61.60	60.11	39.89	37.03
30~39세	203,035	128,822	99,022	29,800	74,213	63.45	76.87	23.13	48.77
40~49세	383,408	252,371	202,845	49,526	131,037	65.82	80.38	19.62	52.91
50~64세	628,285	325,407	249,580	75,827	302,878	51.79	76.70	23.30	39.72
65세 이상	681,889	126,525	101,857	24,668	555,364	18.56	80.50	19.50	14.94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표 3.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13,801	591,930	528,508	63,422	621,871	48.77	89.29	10.71	43.54
여자	822,987	185,229	166,447	18,782	637,758	22.51	89.86	10.14	20.22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표 4.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13,801	669,565	528,508	141,057	544,236	55.16	78.93	21.07	43.54
여자	822,987	233,704	166,447	67,257	589,283	28.40	71.22	28.78	20.22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원인 고려시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망실업자가 여성장애인 중에서 많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ILO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재가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언어장애

(4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심장장애, 신장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발달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는 빈도가 적어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없었으며, 실업률이 0%로 나온 것은 이들 장애가 출현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표본 추출된 장애인 수가 적어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표 5.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지체장애	991,111	489,160	437,419	51,741	501,951	49.35	89.42	10.58	44.13
뇌병변장애	255,928	24,497	22,257	2,240	231,431	9.57	90.86	9.14	8.70
시각장애	216,809	96,435	83,770	12,665	120,374	44.48	86.87	13.13	38.64
청각장애	224,079	88,653	81,452	7,201	135,426	39.56	91.88	8.12	36.35
언어장애	17,097	8,798	7,959	839	8,299	51.46	90.46	9.54	46.55
정신지체	90,615	21,774	18,973	2,801	68,841	24.03	87.14	12.86	20.94
발달장애	7,303	421	421	0	6,882	5.76	100.00	0.00	5.76
정신장애	77,180	13,473	12,302	1,171	63,707	17.46	91.31	8.69	15.94
신장장애	40,286	9,556	8,037	1,519	30,730	23.72	84.10	15.90	19.95
심장장애	39,754	7,515	5,954	1,561	32,239	18.90	79.23	20.77	14.98
호흡기장애	29,953	5,912	5,912	0	24,041	19.74	100.00	0.00	19.74
간장애	13,069	1,525	1,525	0	11,544	11.67	100.00	0.00	11.67
안면장애	3,987	1,757	1,757	0	2,230	44.07	100.00	0.00	44.07
장루·요루장애	15,466	5,146	5,146	0	10,320	33.27	100.00	0.00	33.27
간질장애	14,151	2,537	2,071	466	11,614	17.93	81.63	18.37	14.64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장애인 미취업 원인 고려시, 재가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언어장애(4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발달장애, 간질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 정신장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지체장애	991,111	548,311	437,419	110,892	442,800	55.32	79.78	20.22	44.13
뇌병변장애	255,928	36,883	22,257	14,626	219,045	14.41	60.34	39.66	8.70
시각장애	216,809	109,783	83,770	26,013	107,026	50.64	76.31	23.69	38.64
청각장애	224,079	99,851	81,452	18,399	124,228	44.56	81.57	18.43	36.35
언어장애	17,097	9,183	7,959	1,224	7,914	53.71	86.67	13.33	46.55
정신지체	90,615	32,672	18,973	13,699	57,943	36.06	58.07	41.93	20.94
발달장애	7,303	1,541	421	1,120	5,762	21.10	27.32	72.68	5.76
정신장애	77,180	20,510	12,302	8,208	56,670	26.57	59.98	40.02	15.94
신장장애	40,286	12,038	8,037	4,001	28,248	29.88	66.76	33.24	19.95
심장장애	39,754	10,236	5,954	4,282	29,518	25.75	58.17	41.83	14.98
호흡기장애	29,953	7,450	5,912	1,538	22,503	24.87	79.36	20.64	19.74
간장애	13,069	2,338	1,525	813	10,731	17.89	65.23	34.77	11.67
안면장애	3,987	2,156	1,757	399	1,831	54.08	81.49	18.51	44.07
장루·요루장애	15,466	6,315	5,146	1,169	9,151	40.83	81.49	18.51	33.27
간질장애	14,151	4,002	2,071	1,931	10,149	28.28	51.75	48.25	14.64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2) 취업자의 특성

취업장애인의 취업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157.48개월로서 따라서 13년 이상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가 273.73개월, 호흡기장애가 258.95개월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장애유형은 주로 고령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청각장애가 220.43개월로 상대적으로 취업기간이 길었으며, 뇌병변장애도 173.97개월로 상당히 길었다. 정신지체, 발달장애, 안면장애가 99.82개월, 30.0개월, 58.29개월로서 상당히 짧은 취업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63시간이며, 주당 근무일수는 평균 5.4일, 그리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62시간이며, 월 평균 수입은 114.88만원이었다. 간장애와 호흡기장애의 원평균 수입이 많았으며, 정신장애와 간질장애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취업장애인의 취업기간, 주당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단위: 시간, 개월, 일, 시간, 만원)

구분	주당 근무시간	취업기간 (개월)	주당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만원)
지체장애	46.58	150.11	5.40	8.77	125.48
뇌병변장애	46.74	173.97	5.53	8.24	99.87
시각장애	46.35	150.80	5.25	9.09	115.51
청각장애	44.70	220.43	5.58	8.12	83.76
언어장애	44.63	126.39	4.90	7.84	81.40
정신지체	42.71	99.82	5.90	7.43	47.46
발달장애(자폐증)	54.00	30.00	6.00	9.00	70.00
정신장애	40.79	101.45	5.41	8.29	54.84
신장장애	40.60	149.11	4.80	8.33	153.84
심장장애	33.43	273.73	6.02	5.43	74.10
호흡기장애	41.08	258.95	5.14	9.06	81.62
간장애	30.79	121.65	4.80	6.98	176.55
안면장애	57.87	58.29	5.09	9.96	112.21
장루·요루장애	42.36	127.28	5.65	8.13	124.14
간질장애	28.78	16.99	4.65	5.31	43.53
계	45.63	157.48	5.41	8.62	114.88

취업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는 자영업의 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상용근로자의 순이었다.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장애는 안면장애와 호흡기장애였으며, 상용근로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신장장애였다.

취업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큰 것이 낮은 수입으로, 취업장애인의 45.1%가 문제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업무과다가 16.0%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도 2.2%가 꼽았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도 26.1%에 달했다.

표 8. 취업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25.2	20.3	26.9	19.2	14.9	13.4	100.0	12.9	33.9	6.5	12.6	26.4	13.9	-	-	23.5
	임시근로자	15.9	21.4	15.1	11.3	21.0	25.7	-	25.0	10.9	-	12.0	0.0	0.0	15.2	-	15.5
	일용근로자	18.1	7.4	21.1	18.5	27.7	28.2	-	28.4	19.5	6.5	6.2	19.1	31.3	30.4	79.9	18.8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3.5	2.8	3.1	0.9	-	-	-	-	3.9	7.3	6.7	14.2	0.0	9.9	-	3.1
	자영자1(노점제외)	28.0	21.8	27.2	37.3	27.2	7.6	-	22.2	28.7	46.4	56.0	40.4	54.7	35.8	-	28.6
	자영자2(노점)	2.6	7.0	2.3	1.9	4.9	3.5	-	3.0	0.0	-	6.4	0.0	0.0	-	20.1	2.7
	무급가족봉사자	6.8	19.4	4.3	10.9	4.3	21.7	-	8.5	3.0	33.3	-	0.0	0.0	8.7	-	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457,058	21,959	86,686	81,876	8,327	18,610	421	12,302	9,338	5,588	6,309	1,923	2,150	5,146	2,071	719,764

표 9.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상 애로사항

(단위: %, 명)

구 분	전 체
낮은 수입	45.1
직장 내의 대인관계	2.4
승진문제	0.4
업무과다	16.0
직무관련기능 부족	1.6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1.4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2.2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1.7
출퇴근 불편	1.4
어려움 없음	26.1
기타	1.6
계	100.0
전국 추정수	717,039

3)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였다. 전체 응답자의 45.0%가 심한 장애를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는 24.7%가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또는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각각 2.5%, 10.5%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미취업 또는 구직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 체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2.5
임금이 너무 낮아서	0.2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10.5
작업환경(편의시설 등)이 열악해서	0.2
출퇴근이 힘들어서	0.2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45.0
다른 질병 때문에	2.9
나이가 많아서	24.7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4.5
취업정보·취업방법을 몰라서	0.4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1.2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4.1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진학, 결혼 등)	0.2
재학 중이기 때문에	2.3
기타	1.1
계	100.0
전국 추정수	1,312,125

4)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임금보조이며, 다음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이었다. 이외에도 취업정보 제공(12.8%), 의무고용제준수 유도(8.4%), 취업상담·평가·알선(13.2%) 등을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표 11.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단위: %, 명)

구 분	전 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17.8
취업정보 제공	12.8
직업능력 개발(직업적응 훈련)	16.7
취업상담·평가·알선	13.2
사후지도	2.1
임금보조	23.5
직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5.2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8.4
기타	0.4
계	100.0
전국 추정수	2,008,780

3. 장애인 취업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는 첫째, 장애인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노동 기본권과 고용평등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을 수혜자에서 납세자로 전환한다. 둘째, 장애인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2) 장애인 취업 활성화 방안

장애인 취업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 2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다'고 하여 노동법 일반의 기준이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채용, 승진, 퇴직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방지책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고용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이행수단을 마련한다. 장애인고용차별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사회적 소수(minority group)로 간주, 구직절차, 고용, 승진, 작업장 환경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수단 및 처벌조항을 근로기준법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가 각종 사업발주시 입찰 참가 사업체 중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한 법인세 경감 등 세제 감면 혜택 부여,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취업유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의 경우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특히 시각, 청각장애 등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 기업체에 고용되기보다는 자영업을 창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창업희망자에 대한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영업장소 제공 등 창업지원을 확대하며, 이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인터넷창업도우미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영업 개설 지원, 창업후 중간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성공률을 제고한다. 아울러 현재의 자영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는 창업성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능력 및 자금융자 이외의 기술적 지원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창업지원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판기, 매점 등을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품목은 우선 구매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유도한다. 특히 자판기, 매점의 경우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배정하는 등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선 구매 생산품목의 질적 우위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작업장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중증이상 장애인들을 위하여 스웨덴의 삼할과 같은 장애인 고용 기업을 공사의 형태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공장, 보호작업장, 그리고 자립작업장 등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공장이나 자립작업장, 그리고 보호작업장 등은 규모의 영세성, 시장성 있는 상품생산부족, 장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공장이나 보호작업장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스웨덴 삼할그룹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섯째, 지식·정보화 산업의 신직종, 틈새노동시장 직종 등을 발굴하고 관련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영역을 다양화한다. 특히 지식기반 직종을 확대하되 전통산업직종 개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장애인 적합직종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를 발간 및 보급한다. 장애유형별 직업재활기기, 훈련기자재 연구개발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특정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맞춤훈련, 산학협동훈련,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업방식 활용 등 주문식 직업훈련(customized training)을 강화한다. 이러한 주문식 훈련을 개별교사 차원이 아닌 장애인훈련시스템, 훈련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직업훈련 카드제, 사이버 직업훈련, 민간교육·훈련체계의 활용 등을 통한 독자적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재택 및 원격교육훈련체계의 구축, 방문지도 방식 등을 통해 IT관련 정보화산업직종 훈련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청년·고학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특수학교 재학생 및 일반학교에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교육을 연계하고 체계화한다. 또한 고학력 구직자의 직장체험 및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턴 지원제"를 운영한다.

여섯째,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 노동자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지원고용 시스템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장애인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원고용모델이 시험되고 있으나, 아직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기업에서 일반 기업으로의 전이나 중증이상 장애 노동자를 일반기업에 고용시키는 것은 지원고용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장애인들은 처음에 노동현장으로 투입될 경우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기도 하고, 장애인 복지기업 등에서 일을 하다가 일반기업으로 전직하였을 경우에도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들의 직장 적응과 노동능력의 발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사후지도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원고용제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및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취업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장애인이 정부에 대해 바라는 것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정작 장애인 자신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이 설립돼도 훈련생을 모집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고용 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및 직업재활사업의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